

[일련번호 : 38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및 위원 위촉 시 사전 협의 미이행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과는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위원회의 운영)에 따르면,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단순 사실 관계의 확인 등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,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불충분한 경우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또한 같은 조례 제13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)에 따르면,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·보관하여야 하며,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(비공개 회의 제외)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이는 서면회의의 경우에도 개최일시, 심의위원, 안건의 통과 여부 및 개별 위원의 의견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·공개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의 명칭
2. 개최기관
3. 일시 및 장소
4.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
5. 진행 순서
6. 상정 안건
7. 발언 내용
8.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
9.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

다만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아울러, 양천구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(기획예산과-6370호(2023.5.31.))에 따라 위원 (재)위촉 시 위촉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예산과에 사전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과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및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면서,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회의록 등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, 위원 (재) 위촉 시 기획예산과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[표1] 위원 (재)위촉 사전협의 미이행 내역

연번	신규(연임) 위촉일	회의명	부적정 내역
1	2024.9.24.	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(4명)	기획예산과 사전협의 미이행
2	2025.4.29.	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위촉(10명)	기획예산과 사전협의 미이행

[표2] 회의록 또는 비공개 사유 미공개 내역

연번	위원회명	개최일	상세내역	회의록 또는 비공개사유 공개
1	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	2023.8.1.	2023년 운용계획 변경심의	미공개
2	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	2023.10.16.	2024년 운용계획 심의	미공개
3	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	2024.1.30.	2023년 결산 및 성과분석 심의	미공개
4	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	2024.10.10.	2025년 운용계획 심의	미공개
5	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	2025.2.6.	2024년 결산 및 성과분석 심의	지연공개 (2025.6.5.)
6	도로관리심의회	2023.6.28.	2023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	미공개
7	도로관리심의회	2024.2.15.	2024년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	미공개
8	도로관리심의회	2024.7.5.	2024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	미공개
9	도로관리심의회	2025.2.21.	2025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	지연공개 (2025.5.20.)
10	도로관리심의회	2025.7.17.	2025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	지연공개 (2025.9.1.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위원 위촉시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